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건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희배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문 제10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조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간사 및 수당 등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정책 수립 및 개선 등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능력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협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여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